

2013 사회적 이슈와 인권

제18주제 **성의 상품화와  
성매매여성의 인권**

## 개념과 문제제기

**‘윤락행위등방지법’** (2004. 3. 22. 법률 제7196호로 폐지)



**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’**

(제정: 2004. 3. 22. 법률 제7196호 - 이하 “성매매 처벌법” )

**성매매 ⇨ 성을 사고 파는 행위**

**즉 “불특정인을 상대로 하여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행위(성교 또는 유사성교)를 하는 것”**

⇒ 성매매, 성매매알선 등 행위,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, 성매매를 위한 고용·모집, 성매매와 성매매업소에 대한 광고금지

⇒ <성매매피해자> 신설, 불처벌

## 개념과 문제제기

- \* 자발적 성매매와 강제적 성매매
  - \* 개인적 성매매와 조직적 성매매
- ▶ 자발적이고 개인적인 성매매의 검토

# 강제적 성매매와 피해여성의 권리

## 1. 강제적 성매매의 절대적 금지

- 성매매를 강제(강요)하는 행위 ⇨ 금지와 처벌
- 강제로 성을 판 여성은 피해자로서 보호의 대상
- 대법원 ⇨ 감금된 성매매여성을 보호하지 못하고 방치한 국가의 책임 인정

## 2. 성매매 피해여성의 권리 (북유럽 스웨덴 입법유형에서 유래)

- 강제적 성매매의 피해여성은 처벌 X
- 강제적 성매매와 관련된 채무를 원천적으로 무효

# 자발적 성매매와 성매매여성의 권리

## 1. 자발적 성매매의 허용가능성

### (1) 반대론

- 인신매매, 선량한 성도덕을 타락, 질병 전염 위험성  
⇒ 반인권적, 비도덕적, 반사회적
- 남녀의 불평등한 권력관계 ⇒ 여성의 성에 대한 착취
- 사회구조적으로 강제된 의사에 지나지 않음
- 경제적 착취라는 성매매의 본질을 강화
- 제3세계 여성들의 이주 및 국제적 인신매매 조장

# 자발적 성매매와 성매매여성의 권리

## 1. 자발적 성매매의 허용가능성

### (2) 찬성론

- 성적 자기결정권 또는 계약의 자유
  - 직업의 자유라는 측면      ◦ 성이 개방된 사회
  - 성을 파는 자가 경제적 약자가 아닐 수도 있음
  - 성매매에 대한 수요와 공급은 항상적으로 존재
- ① 합법화와 규제 - 예) 네덜란드
  - ② 비범죄화 - 자발적 성매매의 합법화는 성매매가 형벌이 부과 될 수 있는 범죄는 아니라는 관점

# 자발적 성매매와 성매매여성의 권리

## 2. 자발적 성매매여성의 권리

- 성매매노동자로서의 일정한 권리
- 성매매에 관한 계약에 관한 권리
- 건강에 관한 권리
- 사회보장제도의 수혜

## 성매매에 관한 이성적 논의의 필요성

- ▣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직업 [또는, 포주(pimp) - K.Barry]
- ▣ 자발적 성매매의 경우 여성의 생존권
- ▣ 성매매의 합법화 또는 비범죄화  
⇒ 자발적 성매매에 종사하게 된 여성의 권리를 보장
- ▣ 성매매에 대한 통제 ⇒ 처벌이 아닌 교육
- ▣ 최선의 대안 ⇒ 탈성매매 할 수 있도록 지원



# 토론

1. 사회구조적 원인(예:빈곤)으로 인한 성매매는 강제적 성매매인가?
2. 성매매와 장기매매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?